

서울특별시농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87
------	-----

2007. 9. 10
재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년 8월 17일
- 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7년 8월 21일
- 라. 상정일자 :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(2007년 9월 10일) 상정, 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 : 정순구 산업국장)

가. 제안 이유

-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자산을 관리·운영주체인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하기에 앞서 공사의 법정 자본금 한도액을 증액함으로써, 출자의 여건을 충족하여 증자를 추진하는 한편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골자

-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자본금 증액 및 출자 종류 명시 (안 제4조)
 - 공사의 수권자본금 3천 500억원을 1조원으로 증액함
 - 출자의 종류를 현금 또는 현물로 명확히 정함
-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개정으로, 관할구역안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결산서 등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 (안 제33조제3항 삭제)

3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안석수)

가. 개요

-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-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수권자본금을 3천 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고, 출자의 종류를 현금 또는 현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.

나. 겸토결과

-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자본금 증액 및 현물출자를 명시한 사항은(안 제4조 제1항)
 -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법정 수권자본금 한도액을 증액하고, 출자의 종류를 현금 또는 현물로 정한 것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3조(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)에 의한 것임.
 - 자산평가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, 강서농산물도매시장(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427번지외 9필지, 도로 5 필지제외)은 1997.12.31 공사를 착공한 후 확장공사 ('02.11.3)를 거쳐 2006.5.12 에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 50조(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 ※ 평가기준일 : 감가상각 2007. 6. 30, 개별공시지가 2007. 7. 01 기준)에 의해 자산평가를 하게 된 것임.
 - 현물출자 자산평가방법은 "2007년 발생주의·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"에 따라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(2005.12.31. 이전 취득한 토지는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

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전부 대체평가)로 평가하고, 건축물은 취득원가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한 것이며, 부채는 만기상환액으로 평가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임.

- 또한 현물출자규모를 1조원으로 증액한 사항은, 현행조례에서 정한 기존 공사의 자본금(3,500억 원)을 포함하여 자산평가액인 자본(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, 건물 및 부대시설비 : 5,523억 1백만원)과 부채(48억 7천 3백만원)를 모두 합산하여 1조원 규모로 책정하였음.
- 따라서 농수산물공사의 자본금을 증액 출자하려는 것은 관계법규에 의한 것으로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-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결산서 등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은(안 제33조제3항)
 -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임.
 - 그러나 「지방공기업법」 관련 규정이 2002년 3월 25일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무려 5년이나 경과되어 뒤늦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.
- 그 외 조례제명을 “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 것과, “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지방공기업법”으로 한 것 등은,
 - 정부 및 국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법규제명 띠어쓰기 기준 및 절차를 새로 정한데 따른 것임.(「서울특별시 법제 사무 처리규칙」 2005.6.23 개정)
 - 또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11인”을 “11명”으로 한 것 등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(법제처 2006.12)을 적용한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「지방공기업법」 관련 규정이 2002년 3월 25일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본 조례를 5년 동안이나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, 만약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면 문제라고 보는데?
 - 답변 : 법 시행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림. 다만,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은 없었음.
-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출자하고 있고 운영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해오고 있음. 최근 각 공사들의 부채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, 산업국은 그 동안 농수산물공사가 흑자 경영을 하도록 어떤 지도 감독을 해왔는가?
 - 답변 : 서울특별시가 경영에 참여하여 지난해 64억원의 흑자경영의 성과를 내는 등, 안전한 떡거리 제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제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